

기안용지

불문기호 문서번호	주기 30321-1441 (전화번호 731-6391)	전결규정 국장 4조1항 전결사항
처리기간		<i>11.13</i>
시행일자	85.11	
보존연한	준영구	
보 조 기 관	건설관리국장 주택개량과장 개량과장	전결 <i>11.13</i> 법무담당관 (고시안성사) 첨자필
기안책임자	남궁석	
경 우 수 신 참 조	각안참조	<i>11.13</i> <i>11.13</i> <i>11.13</i> <i>11.13</i>
제 목	주택개량 재개발 구역 지적승인고시	

(제1안) 과부결재

1. 건설부 고시 제 469호 (84.11.17)로 구역결정되고, 같은고시 제 486호 (85.11.8)로 변경결정된 주택개량 재개발 마천제 4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조 규정에 의거 별첨고시안 및 도서와 같이 지적승인 고시하고자 한다.

(제2안) 고시안

서울특별시 고시제 호
주택개량 재개발 구역 지적승인고시

1. 건설부 고시제 486호 (85.11.8)로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 변경결정된 마천제 4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조 규정에 의하여 지적승인고시한다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 및 관할 구청 주택과와 도시정비과에 배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

가. 内역

구역명	위치	면적	비고
마천제 4구역	강동구 마천동 175번지 일대	371.71 ^{ha}	건교 486호

나. 5면 일조서 : 별첨 - 끝 -

(제3안)

수신: 건설부장관

참조: 도시개발과장

제목: 주택개량재개발 구역 지정승인고시

1. 건설부고시 제 486호(84.11.6)로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 변경 결정한 마천제 4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별첨고시문 사본 및 도면과 같이 지정승인고시 하였기 보고합니다.

첨부: 1. 고시문 사본 1부

2. 도면 1부 - 끝 -

(제4안)

수신: 총무처 장관

제목: 관보 게재의뢰

1. 주택개량 재개발 마천제 4구역에 대하여 별첨고시문 사본과 같이 고시하였기 관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: 고시문 사본 1부 - 끝 -

(제5안)

수신: 강동구청장

참조: 주택과장, 도시경비과장

제목: 주택개량 재개발 마천제 4구역 지정승인고시

1. 건설부고시 제 486호 (85. 11. 8)로 변경 결정된 마천제

4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에 대하여 별첨 고시문과 같이 지정승인
고시하였기 통보하니,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,
도시계획 확인원 등 증명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며.

2. 도구역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도록 적극 행정
지원할 것

첨부: 고시안 및 도서 1부 - 끝 -

(제6안)

수신: 도시계획과장, 시설계획과장 발신: 과장

제목: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 지정승인고시 통보

1. 건설부고시 제 486호 (85. 11. 8)로 주택개량 재개발
마천제 4구역에 대하여 변경 결정되었기 별첨 고시문 사본 및
도면을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
첨부: 고시문 및 도면 1부 - 끝 -

(제7안)

수신: 공보관 발신: 과장

제목: 시보 게재 의뢰

1. 주택개량 재개발 마천제 4구역에 대하여 별첨
고시문 사본과 같이 지정승인 고시 하였기 시보에
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첨부: 고시문 사본 1부 - 끝 -

